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39 호

2003 년 10 월 10 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598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 인천광역시규칙 제599호(인천광역시남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4
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90호(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7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58호(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 8
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1호(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14
중개정규칙(안)의2건입법예고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2호(보상계획열람공고(공사명:간석1동900)----- 28
-29번지일원공영주차장건설공사)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4호(신조공인공고)-----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6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40
기준미달업체행정처분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7호(긴급시설공사입찰공고(만수5동만수)----- 41
공원외3개소하수관비굴착보수공사)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8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4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0. 10.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8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관련 별표중 관수자란의 “민원호적담당”을 “민원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제(팀) 신설로 “민원호적팀”이 “민원팀”과 “호적팀”으로 분리됨에 해당업무의 담당자명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정확성을 기함

○ 주요골자

- 별표[기관별·종류별 공인관수자]의 관수자란중 “민원호적담당”을 “민원담당”으로 함(제2조 관련 별표)

인천광역시남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0. 10.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9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2002. 1. 19. 법률 제6619호와 2003. 4.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로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연구역의 확대, 금연시설의 신설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법 제9조제4항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자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를 신설, 포함하여 규정함(제2조제2호 및 제3호)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지정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제3조 관련[별표]제2호 개별기준중 1호, 2호)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허위보고,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함(제3조 관련 [별표]제2호 개별기준중 3호, 4호)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과태료		
		1차	2차	3차
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 제2항	30	100	30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 제4항	30	100	300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 제4항	30	100	200
4.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제1항	30	100	200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0. 10.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9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관련 별표4의 분임심사관란의 “민원호적담당”을 “민원 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직제(팀)의 신설로 “민원호적팀”이 “민원팀”과 “호적팀”으로 분리되어 민원사무심사의 분임심사관을 “민원담당”으로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정확성을 재고함
- 주요골자
- 제10조제1항관련 별표4[심사관]중 분임심사관을 “민원호적담당”에서 “민원담당”으로 개정(제10조제1항관련 별표4)
- *****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58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재원으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과 관련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목적과 보조 기준액의 범위 규정(안 제1조, 제2조)
-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범위 규정(안 제3조)
-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위원회 설치, 구성, 임무,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내지 제8조)
- 보조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변경·취소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

4. 본문내용 : 붙임 참조**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0월 22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32-453-216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6.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비를 재원으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4조(위원회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1/2이하이어야 한다.

1. 구 공무원
 2. 남동구의회 의원
 3. 관할 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신청) ①학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만함)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조례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1호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외2건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및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의 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 및 폐지법규명

- (1)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
- (2)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중개정지침(안)
- (3)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폐지요강(안)

2. 개정 및 폐지 취지

- 행정절차법이 개정·시행(2003.7.1)됨에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및 법제사무처리지침중 “입법예고”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입법예고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더욱 성실하고자 하며 예고방법에 있어서 인터넷활용을 신설했으며 현실적인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법령질의및회시 규정은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명시되어있기에 중복된 예규를 폐지하여 남동구 훈령·예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법규정보시 입법예고의 의무화(규칙 안 제11조등)
- 입법예고방법중 “인터넷”추가
- 공청회에 관한 준용규정 개정(안 제19조)

4. 의견제출

- 위의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0월 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32-453-208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기간 : 2003. 10. 7 ~ 2003. 10. 26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년 월 일

제출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재안이유

- 행정절차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2003.7.1)됨에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중 입법예고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인용 법조항등을 조정하여 법제사무처리의 적합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건소의 자치법규 정비절차 현실화(안 제4조제1항)
- 법제정비시 입법예고절차의 의무화(안 제11조 내지 제12조)
- 입법예고 방법중 “인터넷” 추가
- 공청회에 관한 준용규정 개정(안 제19조)

☐ 본문 : “별첨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참조”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관 실·과장”을 “주관 실·과·소장”으로 하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을 “입법예고”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 및 자구수정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예고문의 작성)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을 “인터넷, 신문, 방송”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를 “행정절차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정비안의 제출)①주관 실·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출장소 및 동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정비는 그 사업소 및 동을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4조(정비안의 제출)①주관 실·과·소장(----- ----- -----). <삭 제>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예고사항)①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농지 기타 토지제도 5. 도시계획 6. 건축 7. 도로교통 8. 행정심판 9. 시험제도 10. 정보화관련제도 11.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는 분야의 사항 ② 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이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제11조(입법예고)①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 및 자구수정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 제> ②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입법예고의 예외)입법예고 대상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12조 <삭 제>	
제13조(예고문의 작성)①주관과장은 예고문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후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3조(예고문의 작성)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예고문은 자치법규안의 제명,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의견접수 기고나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예고방법)①주관과장은 구보 이외에도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정비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예고방법)①----- 인터넷, 신문, 방송,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청회)①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공청회)① ----- ----- ② -----행정절차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의 -----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중개정지침(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2003.7.1)됨
에 남동구 법제사무처리지침상 입법예고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고 인용 법조항등을 조정하여 법제사무처리의 적
합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법상 필요적 조례 규정사항중 인용법령 정비
- 조례의 제·개정 폐지절차중 입법예고대상 예시규정을
입법예고의 원칙하에 예외대상 명시로 개정
- 현행법상 필요적 규칙 규정사항중 인용법령 정비

☐ 본문 : “별첨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참조”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남동구 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중개정지침(안)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자치법규의 **조례** 중 3.조례의 규정사항의 『표 "현행법상 필요적 조례 규정사항(예시)』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란 및 “산업교육진흥법”란, 그리고 “생활보호법시행령”란 다음과 같이 한다.

법령구분	내용	조례구분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군·구	제114조
산업교육진흥및산업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보조	시·군·구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보장기금의 설치·운영	시·군·구	제41조

4.조례의 제·개정, 폐지절차의 라.선행절차 이행 중 (2)조례안사전(입법)예고의 예고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0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안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 및 자구수정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의 3. 규칙의 규정사항의 『표 “현행법상 필요적규칙 규정사항(예시)”』 중 근거법령란의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란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거법령	조항	규칙규정사항	성질	규칙구분	비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0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2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2	시·도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I 자치법규							
[조례]				[조례]			
법령구분	내용	조례구분	근거법령	법령구분	내용	조례구분	근거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0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도	제13조제2항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제114조
산업교육진흥법	0지방산업교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0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보조	시·도 시·군·구	제16조제2항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0사립학교에 대한시설비 보조	시·군·구	제20조
생활보호법시행령	0생활보호기금의 운영·관리	시·군·구	제30조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0보장기금의 설치·운영	시·군·구	제41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4. 조례의 제·개정, 폐지절차

라. 선행절차 이행(업무주관과)

(2) 조례안 사전(입법)예고

- 예고대상 :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에 관련되는 조례

조례 제·개정 필수입법 예고대상(에서) <삭제>

구분	조례
주민의 이해와 관련 사항	-건축조례 -도시개발사업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주택개발사업조례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도,군립공원집단지설지구내건축제한에 관한 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	-지방세관련조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하천, 공유수면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 -공원, 국민관광지등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 -묘지및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 -하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	-중개영업의요금기준과 한도에 관한조례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 및관리조례 -행정서사수수료등에 관한조례 -하수도사용조례 -수도급수조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농업기계화촉진자금융자조례 -장학금지급조례 -여성회관설치조례 -노동자소년복지회관설립조례 -어린이회관설치조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등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	-지방문화재보호조례 -포상조례 -미술대전조례등

4. 조례의 제·개정, 폐지절차

라. 선행절차 이행(업무주관과)

(2) 조례안 사전(입법)예고

-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안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②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③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 및 자구수정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 ④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⑤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규칙 3. 규칙의 규정사항 현행법상 필요적 규칙 규정사항(예시)						규칙 3. 규칙의 규정사항 현행법상 필요적 규칙 규정사항(예시)					
근거법령	조항	규칙규정사항	성질	규칙구분	비고	근거법령	조항	규칙규정사항	성질	규칙구분	비고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제10조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	2	시·군·구		지방계약 직 공무원 규정	제10조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	2	시·군·구	
지방공무원 교육원직제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 교육원직제 규칙	2	시·군·구		지방자치 단체의기 구와정원 에 관한규 정	제2조	지방공무원 교육원직제 규칙	2	시·군·구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폐지요강(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정 1994.. 2.25)
「제6장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질의·회시」로 명시되어 중복된
규정이므로 폐지하여 남동구 훈령·예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폐지

☐ 본문 : “별첨참조”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남동구 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폐지요강(안)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질의및회시요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요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2호

보상계획열람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간석1동 900-29번지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3. 10.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간석1동 900-29번지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의규모 : 898㎡ (노외 주차장)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900-29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03. 11.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간석1동 900-29번지의외 4필지
 - 지 장 물 : 상기 지변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후 현금보상
 - 지장물 즉시 철거 조건으로 지급
 - 보상계약 체결 이전에 소멸된 지장물은 보상 불가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3. 10. 7. - 10. 21.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12.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의거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등은 남동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 있으신 분은 도시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건물면적 (㎡)			층별	구조	용도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전체	편입	잔여				성명	주소	
1	간석동	900-29	12.22	12.22		1층	적벽돌, 스라브	주택	이용식	남동구 간석동 900-29	425-9419
			79.56	79.56		1층	적벽돌, 스라브	주택			
			7.46	7.46		1층	세멘벽돌, 스텔트	보일러실			
			1.30	1.30		1층	세멘벽돌, 스라브	변소			
			2.31	2.31		1층	세멘벽돌, 스라브	창고			
			13.68	13.68		지하	세멘벽돌, 스라브	보일러실, 창고			
			7.20	7.20		지하	삿시, 스라브	창고			
계			123.73	123.73			철조문 1식(B=2.7m), 세멘벽돌담장 14.7m, 정화조 1식				
2	간석동	900-30	73.33	73.33		1층	적벽돌, 스라브	주택	유지인	남동구 간석동 900-30	422-5467
			4.95	4.95		1층	삿시, 스라브	주택			
			1.40	1.40		1층	세멘벽돌, 스라브	화장실			
			2.70	2.70		1층	목조, 스텔트	건사			
			2.42	2.42		1층	세멘벽돌, 스라브	창고			
			13.68	13.68		지하	세멘벽돌, 스라브	보일러실, 창고			
			4.95	4.95		지하	삿시, 스라브	창고			
계			103.43	103.43			스텐레스문 1식(B=2.8m), 세멘벽돌담장 10.1m, 적벽돌담장 1.0m, 불력담장 10.2m, 정화조 1식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건 물 면 적 (㎡)			층 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등 록	지 번	전 체	편 입	잔 여				상 평	주 소	
3	간석동	900-31	73.33	73.33		1층	적벽돌,스라브	주 택	염 중 운	남동구 간석동 900-31	425-5043
			4.95	4.95		1층	샷 시, 스라브	주 택			
			5.40	5.40		1층	세멘벽돌,스라브	주 택			
			3.30	3.30		1층	세멘벽돌,스라브	보일러실,통로			
			13.68	13.68		지하	세멘벽돌,스라브	보일러실,창고			
계			100.66	100.66			스틸러스문 1식(B=2.8m), 샷터문 1식(B=4.3m), 적벽돌담장 7.9m, 세멘벽돌담장 4.7m, 정화조 1식				
4		900-32	10.29	10.29		1층	적벽돌,스라브	주 택	이 소 영	남동구 간석동 900-32	425-9646
			73.97	73.97		1층	적벽돌,스라브	주 택			
			4.14	4.14		1층	샷 시,스라브	주 택			
			9.88	9.88		1층	세멘벽돌,스라브	주 택			
			3.61	3.61		1층	세멘벽돌,스라브	창 고			
			1.30	1.30		1층	세멘벽돌,스라브	화장실			
			13.68	13.68		지하	세멘벽돌,스라브	보일러실,창고			
계			116.87	116.87			샷시문 1식(B=2.7m), 세멘벽돌담장 8.7m, 정화조 1식				

장 대 사 조 막 임

NO. 1		소 재 지	지 번	종 수	평 수	주 수	리 택 판 장	이 가	장 파 퍼 구	소 유 자	비 고
간 석 동			900-29	포 도	25년	1				이 용 석	425-9419
				장 미	20년	1					
				단 막	20년	1					
				사 철	20년	7					
				향	20년	1					
				도 장	20년	8					
				가 문 비	20년	1					
				라 일 락	20년	1					
				막 편	20년	1					

임 목 조 사 대 장

NO. 2

소 제 지	지 지	종 수	수 령	주 수	리 태 관 장	이 각 가	강 판 퍼 구	소 유 자	비 고
간 석 등	900-30	간 장 미 리 일 락 모 과 마 화 과 주 마 소 매 화 사 철 모 장 수 화 교 단 마	25년 20년 20년 15년 7년 5년 2년 10년 20년 20년 20년 20년 10년	1 2 1 1 1 2 1 5 2 26 1 1				이 용 석	425-9419

임
매
전
사
대
장

NO. 3

소재지	지번	종수	평수	주	리법 관장	이 가	상 판 퍼구	소 유 자	비 고
간석동	900-31	추대	20년	1				완	425-5043
		행	5년	1				영	
		장	20년	22					
		타	20년	1					
		행	15년	1					
		감	10년	1					
		미	10년	3					
		를	10년	4					
		개나리	5년	1					
		주	10년						

장
대
사
조
목
명
입

NO. 4		비 고	소유자	상 품 포 단	상 계 이 가	리 태 판 상	주 수	수 령	종 수	지 번	소 제 지
간 석 동	1	426-9646	이 소 영				1	15년	감	900-32	
	2						2	5년	감		
	3						3	10년	매 화		
	1						1	20년	라 일 락		
	5						5	10년	췌 쪽		
	5						5	20년	장 모		
	1						1	10년	단 막		
	2						2	15년	장 미		

강 사 조 목 임

NO. 5

소재지	지번	종수	수령	주수	리태	이거	상파	소유자	비고
간석동	900-32	복숭아 매화 대추 도장 철쭉 라일락 무화과 목련 감 도 포도 능수화 무 영 백일홍 단풍 사철 주목	30년 10년 10년 15년 10년 15년 15년 10년 6년 6년 10년 10년 5년 3년 15년 10년	1 4 3 3 10 3 2 3 1 1 1 3 3 3 2 3				최영숙	424-5498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4호

신조공인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신조(폐기)사유 : 향촌지구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른 공인(신조)교부
2. 신조공인 최초사용년월일 : 2003. 10.
3. 신조(폐기)공인명 및 인영

신 조 공 인		공 인 내 역	
공 인 명	인 영	글 씨 체	규격(가로×세로)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장인(대한주택공사 장전용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4cm×2.4cm

신 조 공 인 현 황

공 인 명	용도 및 사유	글 씨 체	규격 (가로×세로)	비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장 인 (대 한 주 택 공 사 장 전용인)	향촌지구 보상업무 위 수탁 협약체결에 따 른 공인(신조)교부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4cm×2.4cm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6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기준미달업체행정처분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3.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처분일 : 2003. 10. .
2. 행정처분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취소
3. 행정처분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사무소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비고
장강물류	김연호	논현동434-1	무단휴폐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및“별표5”의 행정 처분기준에의거“사업등록취소”	
삼천리통운	홍진섭	간석4동571-2	무단휴폐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및“별표5”의 행정 처분기준에의거“사업등록취소”	
상원물류	이상민	구월1동1218-13	무단휴폐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및“별표5”의 행정 처분기준에의거“사업등록취소”	

4.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032-453-2745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7호

긴급시설공사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사항

- 공 사 명 : 만수5동 만수공원외3개소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기초금액 : 200,541,000원(부가세포함)
- 공사개요
 - 하수관비굴착보수D=450 : 68개소
 - 하수관비굴착보수D=500 : 6개소
 - 하수관비굴착보수D=600 : 81개소
 - 하수관비굴착보수D=700 : 8개소
 - 하수관비굴착보수D=1200 : 15개소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3.10.13(월)10:00~ 10.21(화)16:00
-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 2003. 10. 22(수) 1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등록기간중 설계서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하수팀 : 032- 453-2582)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상하수도공사업 등록을 필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신기술의 활용등)에 의한 하수관 비 굴착 부분보수공법 신기술지정업체 또는 협약을 맺은 기술보유업 체로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로서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2003.10.21 16:00)까지 관련서류를제출 (제출처 : 남동구청 건설과 032- 453-2542)한 업체에 한하여 입 찰(개찰)집행 처리되며, 제출하지 않은 투찰업체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 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의 무효에 관한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5. 낙찰자결정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95점이상)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87.754%)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중 최저가 입찰순으로 우리구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지정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적격심사 제출(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중 제5조(제출서류등)에 의한 서류
- 7. 수행능력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중 [시공실적순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방법(추정 가격 전문공사 2억원미만)] 의 방법
- 8. 기타사항
 - 본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WWW.g2b.go.kr)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453-254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3. 10. 10.

인천광역시남동구하수도특별회계기업출납원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468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10. 10 ~ 2003. 11. 8(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11. 8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10.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111	2층 가옥	브릭스레트	130.41	김철주	남동구 논현동 111	
			가옥	브릭스라브	24.84			
			황해건어물	브릭스라브	41.40			
			미화사	브릭스라브	64.17			
			가추	철골천막	36.69			